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1094285
신청일	2026-08-27 06:39:03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토부 감사과 임가현+박상용에게, "도둑년 안선행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보낸다
내용	임가현, 박상용 돌대가리들에게 1. 도둑년 안선행 감사하라고 민원 신청하였더니, 서로 팔밀이하더니만 급기야는 도둑년 안선행에게 감사하라고 넘기고, 안선행은 또 다시 은평구청으로 이송하고(첨부자료) 아주 놀고들 자빠졌다 2. 니들이 벌이고 자빠진 짓은 [형법] 제151조에 저촉되는 범죄야, 돌대가리들에게 특별히 미리 알려주는 거니 참고해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자세한 건 ⇒https://seokgung.com/corrupt9.htm#diagram * 국민신문고 담당자에게 국토부에서 어떻게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하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니 반드시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라
첨부 파일	안선행2026-08-27 06-27-59.png 안선행2026-08-27 06-35-39.pn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